

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222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2. 6.

제출자 : 대구광역시 달성군수



1. 요구이유

-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련 복지사업 전반을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·사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제고하고
-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구함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 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 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 21조의 2(시설의 위탁)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 4조, 제4조의 2

3. 주요 내용

가. 위탁내용

- 어르신들의 복지 문화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
-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

나. 시설현황

위치	시설규모	예상직원	예상이용 인원(1일)	비고
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	3203.77m ² (교육문화복지센터 2층)	13명 (관장, 사회복지사, 영양사 등)	500명 정도	2023. 3. 준공예정

다. 위탁필요성

-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
-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

라. 수탁운영자 모집 · 선정 및 위탁기간

- 모집방법 :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
- 심사 및 선정방법 : 서류 및 사업제안설명 심사 후 선정위원회 의결
- 선정기준 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의2
- 위탁기간 : 5년(2023. 3. 1. ~ 2028. 2. 29.)

마. 위탁운영 예산

- 관련예산 : 960백만원(시 266, 군 694)

4. 관련 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4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 21조, 제 21조의 2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 4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 4조

5. 향후 추진일정

- 의회 동의 : 2022. 12.
- 모집공고 : 2022. 12~ 2023. 1.(15일간)
- 신청서 접수 : 2022. 12~ 2023. 1.(5일간)
-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3. 1.
-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: 2023. 1.
- 물품구입 및 배치 : 2023. 1.~2.
- 위탁운영 시행 : 2023. 3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<개정 2011. 8. 4.>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-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. 3.>

[본조신설 2004. 9. 6.][제2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2. 위탁계약기간
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지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- 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4조(운영)

-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운영한다. 다만,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위탁 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30, 개정 2015.12.30)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(신설 2018. 10. 30.)

